

<p>업체의 사업장내 재산"으로 하며, 제4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제42조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질의회신·지침·편람 등)"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p> <p>1. 제안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개정조례안은 2000. 2. 1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0. 2. 23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하여 2000. 2. 26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li> </ul> <p>2. 제안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수강료 징수에 있어 현행 336시간 과정 외에 672시간 과정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li> </ul> <p>3.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강료 징수방법을 개강 5일전까지 전액징수토록 하던 것을 개강전 교육감이 지정하는 날까지 전액 징수하되 필요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li> <li>○ 현행 336시간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 1인당 연수경비는 총액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를 1인 1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별표1)</li> </ul> <p>4.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 6. 21 제정된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교사 전담교사 임용에 필요한 336시간 보수교육 과정에 대한 수강료 징수만을 규정하고 있어,</li> <li>○ '99. 9월 교육부에서 기 선발된 교과전담교사에게 672시간의 추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에 정규교사 자격증을 부여토록 추진함에 따라, 추가보수교육 과정(672시간)에 대한 수강료징수근거가 필요하게 된 것임.</li> <li>○ 따라서, 현행 과정당 징수하고 있는 연수경비를 연수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서 징수토록 함으로써 추가보수교육 과정에 대한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li> <li>○ 다만, 수강료 납부시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로 인해 수강대상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li> </ul>
---	---